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0380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5. 자동차부품 및 금형의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5. 2. [redacted]시 B 외 1필지 토지 11,084㎡ 및 그 지상 건축물 4,844.9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5,084,622,945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03,384,910원, 농어촌특별세 10,169,240원, 지방교육세 20,338,490원 합계 233,892,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는 2011. 1. 31.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콜드챔바 다이캐스팅머신 외 9개의 기계를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에는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감가상각자산이 30% 이하인 경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고는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전부를 매입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는 C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던 D이 설립한 법인으로, C과 사이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게다가, 원고와 C은 그 제조종목 및 주력제품이 상이하고, 원고는 새로운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C의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C의 기존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소정의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D은 1989.부터 2011. 2.까지 자동차부품 및 금형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C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1. 1. 31.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콜드챔바 다이캐스팅머신 외 9개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대금 692,5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 사업분리계약서
원고를 (갑)으로 하고 C을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사업분리 및 설비매각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을)의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문과 그에 사용되는 설비의 일부를 (갑)에게 매각하여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토대로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을)의 사업부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을)이 보유한 알미늄다이캐스팅 설비라인을 (갑)에게 매각하여, (갑)이 독립적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갑)은 동 사업에 대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한다. 제3조(매매금액) 3-1(매매대상)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 다이캐스팅설비 매매계약서 별첨 3-2(매매금액) 금 육억구천이백오십육만원정 (₩692,560,000) VAT별도

2) 원고의 2011.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순자산가액은 1,297,890,227원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692,560,000원으로, 위 가액이 유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36%이다.

3) 원고는 2011. 3. 1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을 등록하였고, 그 후인 2011. 6. 30.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을 업종으로 하던 C의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공장(이하 'C 제2공장'이라 한다)은 폐업하였다.

4) 원고 설립 당시인 2011. 1. 24.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6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판단기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 '2015.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결 참조).

다)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으로부터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문 및 그 설비라인을 승계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C이 기존에 하던 자동차부품 및 금형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C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가액이 원고의 총 유형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것은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사업과 C의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으로부터 알미늄다이캐스팅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인수한 점, 원고의 공장 및 C의 제2공장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을 그 업종으로 삼고 있는 점, C의 제2공장은 원고 공장 설립 후인 2011. 6. 3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의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기존 C의 제품과 차별화되는 다이캐스팅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을 C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입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임재남

판사 이미경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15

자자가 될 것. 끝.